

대구지방법원 2018. 12. 27 선고 2018가단12758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18. 12. 13

판결 선고 2018. 12. 27

주 문

-rnr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. 8.24. 접수 제429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4. 8. 24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4. 7. 30.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같은 날 원고는 고모부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. 8. 19.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,950만 원의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다. F은 2007. 9. 8. 사망했고, 피고들은 그의 상속인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생기게 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.

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.

피고들은 등기의무자 F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[피고들은, 망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그가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(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다), 거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설정되었으므로 무효이다]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김은구

(별지)

부동산의 표시

1. 대구 남구

대 106.1 nf

2, 대구 남구 | H—I호

[도로명주소] 대구 남구 |.

위 지상

목조 외층 평가건주택

건평 14평6흡

세멘부록조 육층

평가건 참고

건평 1평8흡4작: ■■